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3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서영석・김경만・인재근

이정문 • 맹성규 • 김원이

이해식 · 오영환 · 민병덕

문진석 · 정춘숙 · 강선우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하지만 2018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4만 8,660건으로, 하루에 681 건의 가정폭력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3년 전인 2015년의 22만 7,630건보다 2만 1,030건 증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규정함으로써 즉각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 권 행사를 제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처분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 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루어지던 것을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호).
- 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신설함(안 제5조제1호 신설).
- 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 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신설).
- 라.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

- 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제9조의2 삭제).
- 바.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처분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를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및 제322조(미수범)"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차목"을 "카목"으로 한다.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체포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2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

- 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병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④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제3항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를 "검사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각각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제55조의3제1항 본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임시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	3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	사
거침입의 죄 중 <u>제321조</u>	제319조(주
<u>(주거·신체 수색)</u> 의 죄	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
	<u>(</u> 특수주거침입), 제321조(주
	<u>거·신체 수색) 및 제322조</u>
	<u>(미수범)</u>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의 죄
<u>카.</u> 가목부터 <u>차목</u> 까지의 죄	<u>타.</u> <u>카목</u>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죄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 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다.

<신 설>

1. ~ 4. (생 략)

<신 설>

조치)	

-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체포
-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 제6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가정폭력범죄 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 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 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 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 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 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 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 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병과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 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 한다.

- ④ 법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u>피</u> <u>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u>은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 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검사</u>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3) -----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가정구성원----------<u>검</u>사와 피해 자 또는 가정구성원---------각각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 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 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 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u>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u> 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 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히 체 zl/
<u>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u>
인을 포함한다) 또는 가정구성
<u>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
치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그 그 거기근/회
<u>하고, 그 결과를(피</u>
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통보하여
<u>야 한다</u> .
<u><삭 제></u>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② ~ ⑥ (생 략)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5.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
간) ①
<u>1</u>
<u>년</u>

-----3년-----. 제63조의2(임시조치 등의 불이행 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 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 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 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 | <삭 제>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제66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 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 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 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 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 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 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 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